O =====	보 도 자 료		#	
국토교통부	배포일시	2021. 3. 2.(화) / 총 6매(본문3, 참고3)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	
담당 지적재조사기획단 부서 사업총괄과	담 당 자	• 과장 유상철, 사무관 박정원 • ☎ (044) 201-4655, 4662, 4660		
		3월 3일(수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!, 방송, 인터넷은 3. 3.(수) 06:00 이후 보도 가능		

3일부터 「지적재조사법」하위법령 입법예고

- 책임수행기관 연내 지정…민간 참여 높여 일자리 창출 기대 -

- □ 국토교통부(장관 변창흠)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속도감 있는 효율적 추진을 위해 「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^{*}」 지정에 필요한 지정 요건・범위 등을 정하기 위한 「지적재조사법」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('21.3.3.~4.12.) 입법예고한다.
 - * 책임수행기관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사·측량 등의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
- 지적재조사는 110년 전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종이지적도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이다.
- □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업무를 전담하는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하고, 책임수행기관의 주도하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*하여 2030년 까지 지적재조사 사업을 차질 없이 완료할 계획이다.
 - * '12~'20년까지 지적재조사 투입예산 1,391억원 중 민간업체는 120억원(8.6%을 수주) 하였으나, 향후 민간업체의 참여비율이 최소 35% 이상이 되도록 지원할 계획
- □「지적재조사법」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① 책임수행기관 지정·지정취소요건 및 절차, 운영규정 제정 근거 마련
 - 책임수행기관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적측량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인력*·장비 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^①전국, ^②권역별, ^③시·도별로 지정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요건으로 정하여 진입 장벽을 낮추었다.
 - * (인력요건) 전국 1,000명↑, 권역별 200명↑, 시·도별 100명↑
 - 책임수행기관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적재조사사업의 **추진실적을** 보고하도록 책임을 부여하였으며,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불복구제 절차 등도 마련하였다.
- ② 책임수행기관의 민간업체에 대한 업무 재위탁 근거 마련
 - 책임수행기관은 사업시행자인 기초 지자체장(지적소관청)으로부터 지적재조사 **측량・조사업무**를 위탁받아 측량・조사업무의 일부를 **민간업체에 재위탁**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.
- ③ 책임수행기관 지정·지정취소 권한 위임
 - 책임수행기관 제도와 지방자치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**광역** 시·도별로 책임수행기관 지정·지정취소, 실적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도록 광역시·도지사에게 위임하였다.
- □ 국토교통부 남영우 지적재조사기획단장(국토정보정책관)은 "이번 개정으로 연내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하여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, 민간의 참여를 높여 일자리 창출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"이라고 밝혔다.

- □ 이번 지적재조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 ('21. 4. 12.)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((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), 우편, 팩스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 - * 의견제출처 : (우)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5동 국토 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 / 팩스 : 044-201-5678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 박정원 사무관(☎ 044-201-4662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1 지적

지적재조사법 개정안[20.12. 22.] 주요내용

□ 개정 이유

- 지적재조사사업에 민간 지적측량업자 참여율을 제고하여 산업 활성화 및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책임수행기관 제도를 도입
- 지적재조사 예정지구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**알권리를 강화**하고, **토지현황조사・측량시기**를 실시계획수립한 때로 **앞당겨** 사업기간 단축

□ 개정 주요내용

- ① (위탁제도 도입) 지적재조사사업을 LX·민간에 "대행"토록 하는 제도를 책임수행기관에게 "위탁"할 수 있도록 함(§5)
 - * "지적측량수행자" → "**책임수행기관**". "대행" → "**위탁**"
- ② (책임수행기관 지정)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· 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책임수행기관을 지정(§5조의2)
- □ (유 위임) 책임수행기관 지정·지정취소 할 때 고시절차와 방법,
 □ 밖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
- ③ (예정지구 등록) 실시계획에 포함된 필지는 지적재조사 예정 지구임을 지적공부에 등록(§6)
 - \star 지적공부등록을 위한 코드신설 「지적재조사 업무규정」행정예고(4 20.1.18 4 2.10.) 중
- ④ (조사·측량시기) 실시계획을 수립한 때 지적재조사예정지구로 등록된 토지를 대상으로 **토지현황조사**와 **지적재조사측량 실시**(§10)
 - $_*$ (현행절차) 실시계획 \rightarrow 동의서 징구 \rightarrow 사업지구 지정 \rightarrow 현황조사 및 측량
- o (기타) 책임수행기기관의 임직원은 벌칙적용에서 공무원 의제

지적재조사 추진체계 개선 방안

< 책임수행기관 운영 안 >

LX와 민간사업자 경 쟁 체 제



책임수행기관 전담 민간사업자와 협력

< 책임수행기관(역할) >

- ◈ (상생·협력) 책임수행기관과 민간업계 간 협약체결을 통해 민간업체 수행자에 대한 기술 교육지원을 수행 및 민간의 지적재조사사업 참여 확대 지원
- ◈ (공적기능 강화) 책임수행기관은 전담조직 설치를 통한 공공일자리 창출
 과 민간사업자 포용정책 등 책임수행기관으로서의 공적 역할 확대
- ◈ (안정적 사업추진) 매년 사업물량 증가분에 대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 하되 국민의 소유권 보호와 디지털 지적구축의 사명감을 최우선하는 역할 부여

【 책임수행기관 운영으로 달라지는 내용 】

구 분	현 행	개 선		
재 원	• 국가예산(측량수수료)	• 국가예산(위탁수수료)		
국고보조	• 국토부⇒지자체⇒LX/민간	• 국토부⇒지자체⇒책임수행기관 (일부 재위탁)		
수행체계	• LX와 민간업체간 경쟁 및 지적재조사 측량·조사 대행	• 책임수행기관·위탁 수행 • 일필지측량 등은 재 위탁		
처리기간	• 사업지구별 약 1.5~2년 소요	• 사업지구별 1년 이내 완료		
효 과	• 민간업체 참여율 7% • 사업기간 장기화	 민간참여율 확대(7→30~40%) 사업주기 단축(1.5~2→1년) 공공일자리 창출 2030년 목표기간 내 완료 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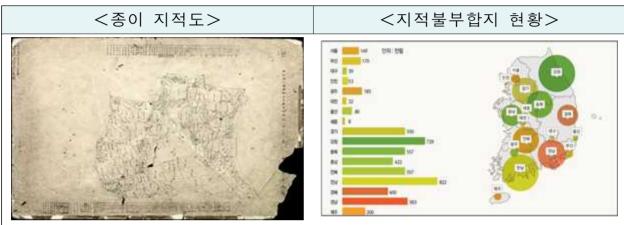
○ (역할분담 안)

지구계 측량	일필지 측량	면적측정 및 계산	토지현황 조사서 작성	경계 조정·협의	확정 경계점 설치	경계 확정 측량	지적확정 예정조서 작성	지상 경계점 등록부 작성	성과물 납품
책임	민간사업자		책임수행기관						

참고 3

지적재조사 사업개요

- □ (추진배경) 토지경계를 등록한 종이 지적도면의 훼손·마모 등으로
 인해 전국적으로 지적불부합지*가 발생하여 경계분쟁 지속
 - * 지적공부상의 토지경계와 실제 이용하고 있는 현장경계가 불일치한 토지



□ 현 지적공부는 **토지조사사업**(1910~1918년) 당시 측량기술로 종이도면에 등록되었고, 이에 따라 현재 전국의 14.8%(554만 필지)가 지적불부합지로 조사되었음

□ (사업내용)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 만들어진 **종이 지적공부**를 최신 기술로 새롭게 등록하면서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는 국가사업

사업대상	사업기간	총사업비	근거법령
554만 필지	'12 ~ '30	1조 3천억 원	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
(전국 3,743만 필지의 14.8%)	(19년간)	('12년 예타)	('11. 9. 16. 제정)

□ (추진체계 및 절차) 국토부(기본계획 수립, 사업관리), 시·도(지구 지정), 시·군·구(경계확정, 조정금산정), 지적측량수행자(일필지조사 및 측량)

